

법과학기본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35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박은정 · 전용기 · 김준형
김재원 · 김형연 · 황운하
정춘생 · 신장식 · 차규근
서왕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를 별도로 두고, 범죄수사 증거물의 신속·정확한 감정·분석, 사이버범죄에 체계적인 대응으로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원해왔음.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청이 출범하였음.

감정은 수사·감식 과정에서 채취된 증거물에 대한 사실 관계의 과학적 해석 및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감식·감정을 거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한 기소기관의 재감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어긋남.

또한 수사기관이 직접 감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사방향에 따라

감정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과 분리된 독자적 운영이 필요함.

이에 법과학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과학에 관한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 감정의 독립성·중립성 보장, 법과학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증거 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과학기본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과학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범죄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편견과 예단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과학”이란 과학수사 및 재판과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도구·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과학적 방법으로 범죄증거를 수집·분석하는 일련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을 말하며 법의학·법과학·법공학분야 등을 포함한다.
2. “과학수사”란 수사과정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기술·기법·장비·시설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말한다.

3. “현장감식”이란 사건과 관련된 현장에 임하여 현장상황의 관찰, 증거물의 수집·채취 등을 통하여 범행 당시의 현장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감정”이란 현장감식을 통하여 수집·채취한 증거 또는 사건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물을 과학수사 장비 또는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범죄수사에 필요한 지식이나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감식, 분석, 검사 등을 포함한다.

5. “검시”란 의문있는 죽음에 대해 검안 및 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사망의 원인이나 사망 상황, 기타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감정등”이란 감정과 검시를 말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과학수사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 및 개발 등 법과학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법과학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법과학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법과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법과학의 진흥을 위한 법과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과학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법과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감정 등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4. 첨단 법과학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법과학 감정결과의 신뢰성 보증을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제7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법과학진흥을 위한 재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과학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7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법과학진흥위원회) ① 법과학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법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9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법과학 업무와 관련

이 있는 자

2. 법과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 또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④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제7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7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설치와 독립성) ①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과학·법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의 사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으로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및 분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조(업무)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과학 정책의 총괄·조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범죄 수사 및 재판 등에 필요한 법과학적 감정에 관한 사항
3. 법과학 관련 기준·지침의 제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법과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5. 법과학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법과학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① 연구원에는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연구소 및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지방연구소에는 소장 1명, 분원에는 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③ 연구원(지방연구소 및 분원을 포함한다)에 공무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10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의 임명) ① 연구원의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지방연구소의 소장과 분원의 분원장은 법과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구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감정관 및 법의관의 자격 등) ① 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감정관을 두며, 감정관은 연구사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거쳐야 한다.

②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법의관을 두며, 법의관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법의부검 경력을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자격과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업무독립성 및 의무사항

제12조(감정등의 독립성 보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정등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감정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벌칙)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감정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로부터 획득한 증거를 인멸, 은닉 또는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감정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저질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종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